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등 「군무원인사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나. 채용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138조)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근거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경력경쟁채용의”를 “경력경쟁채용등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을 “법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신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경력경쟁채용하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경력경쟁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경력경쟁채용을 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경력경쟁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

실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내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력경쟁채용하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

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채용된”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제2호 중 “경력경쟁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② (생략)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u>경력경쟁채용시험</u> 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직급별 보충 인원, <u>경력경쟁채용</u> 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③ ----- ----- ----- ----- ----- ----- <u>경력경쟁채용시험</u> <u>등</u> ----- ----- -- <u>경력경쟁채용등의</u>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u>경력경쟁채용 요건</u>) ① <u>법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10조(<u>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u>) ① <u>법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신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u>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u>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u>	1. ----- ----- <u>경력경</u> <u>쟁채용등을 하려는</u> -----

사유가 확인된 사람	-----
2. 삭 제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 허증을 가진 사람을 <u>경력경쟁</u> <u>채용하는</u> 경우에는 「국가기 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 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 증을 가진 사람	3. ----- ----- ----- <u>경력경쟁</u> <u>채용등을 하려는</u> ----- ----- -----
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u>경력경쟁채</u> <u>용하는</u>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가. ~ 다. (생 략)	4. ----- ----- <u>경력경쟁채</u> <u>용등을 하려는</u>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u>경력경쟁채용하는</u>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 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 <u>경력경쟁채용등을</u> <u>하려는</u> ----- ----- -----
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u>경력경쟁채용하는</u>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 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6. ----- <u>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u> -- ----- ----- -----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u>경력경쟁채용하는</u> 경우에는 <u>경력경쟁채용시험일</u>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7. ----- <u>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u> <u>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u> <u>험일</u> ----- ----- ----- -----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u>경력경쟁채용하는</u>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8. ----- ----- ----- ----- <u>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u> -- ----- -----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u>경력경쟁채용을 하는</u>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9. ----- <u>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u> -- ----- ----- ----- ----- --
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u>경력경쟁채용하는</u>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	10. ----- -- <u>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u> -----

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
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
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
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
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
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
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
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
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
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
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
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
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
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
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
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
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
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
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
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 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신 설>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
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
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
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
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
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
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u>경력경쟁채용된</u>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u>경력경쟁채용시험</u>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u>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u>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된</u> ----- ----- -----. ----- -----.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u>경력경쟁채용시험</u>등을 ----- ----- ----- ----- ----- -----
--	--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
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
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
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한다.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
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7급
·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
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생략)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
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
만 실시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
-----.

② ----- 경력경쟁채용
시험등-----

-----.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

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 5. (생 략)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④ (생 략)

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 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

1. (현행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3. ~ 5. (현행과 같음)

②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
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
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
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
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
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
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
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
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 ②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36조(전보) ①·② (생략)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1. (생략)

2.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제36조(전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채용된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등-----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 4. (생략)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 2.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연 락 처	(02) 748 - 5108